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347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정부안) ...	2
--	---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4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9. 2.
-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율(제8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 주종별 세율의 <u>100분의 50</u> ※ 시행령 제7조 ○ (발효주) 200kl 이하: 세율의 50% 경감 ○ (증류주) 100kl 이하: 세율의 50% 경감	☐ 경감한도 확대 및 경감율 조정 근거 마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 주종별 세율의 <u>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 가능</u> ※ 시행령 제7조 ○ (발효주) 200kl 이하: 세율의 50% 경감 200~400kl: 세율의 30% 경감 ○ (증류주) 100kl 이하: 세율의 50% 경감 100~200kl: 세율의 30% 경감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472)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경감한도를 확대하면서, 확대분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주¹⁾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이

1)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한 ‘민속주’²⁾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지역특산주’³⁾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하여는 세율의 50%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2008년에 신설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전통주에 대한 세율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주 중 발효주⁴⁾는 직전 주조연도⁵⁾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500kl 이하로 제조하거나 신규제조면허자인 경우 먼저 출고된 200kl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50%를 경감해주고,

전통주 중 증류주⁶⁾는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250kl 이하로 제조하거나 신규제조면허자인 경우 먼저 출고된 100kl에 대하여 세율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음.

[전통주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수량 등]

전통주	적용대상	적용수량	기본세율	경감율
발효주	- 직전 주조연도 반출수량 기준 500kl 이하 제조 - 신규제조면허자	먼저 반출된 200kl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기본세율의 50%
증류주	- 직전 주조연도 반출수량 기준 250kl 이하 제조 - 신규제조면허자	먼저 반출된 100kl	증류주: 100분의 72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한산 소곡주,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금산 인삼주, 계룡 백일주 등

3) 고창 복분자주, 지리산 머루주, 영월 더덕주, 광양 매실주, 진도 홍주 등

4)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및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외의 것

5)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6)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및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를 섞은 것 등

□ 코로나19 이후 단체 음주문화 대신 개인 또는 소규모의 음주문화가 확대되고, 음주의 목적이 단순히 취하기 위한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즐기기 위한 음주 문화로 변화하면서 소매점, 인터넷, 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구매가 가능한 전통주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주류 출고액 9조 9,703억 2,200만원 중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인 1,629억 1,200만원으로, 2012년 기준 국내 전체 주류 출고액 8조 3,957억 6,700만원 중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52%인 434억 900만원과 비교시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국내생산 전체 주류 및 전통주의 출고액]

(단위: 백만원)

연도	전체 주류	합계	전통주	
			민속주	지역 특산주
2012	8,395,767	43,409	9,020	34,389
2013	8,811,704	48,576	9,773	38,803
2014	9,126,908	46,772	10,891	35,881
2015	9,361,633	40,882	10,335	30,547
2016	9,296,077	39,656	10,437	29,219
2017	9,243,659	40,029	10,307	29,722
2018	9,039,379	45,573	11,999	33,574
2019	8,941,277	53,128	12,167	40,961
2020	8,799,538	62,664	11,997	50,668
2021	8,834,539	94,149	10,973	83,176
2022	9,970,322	162,912	10,616	152,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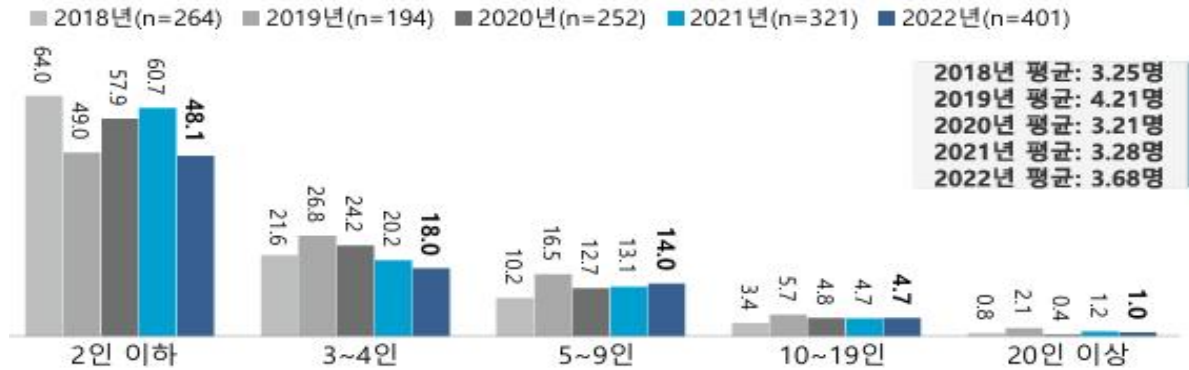
자료: 국세통계연보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7명으로, 종사자 수 2명 이하(48.1%)가 가장 많

고, 전통주 제조업체의 매출액 분포는 5천만원~2억원 미만(26.4%)이 가장 많아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⁷⁾됨.

[전통주 제조업체의 종사자수 현황]

(단위: %)



자료: 2022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전통주 제조업체의 매출액 현황]

(단위: %)



자료: 2022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 개정안은 2008년 이래 경감요건과 적용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통주의 주세에 대한 경감대상과 경감한도를 확대하면서, 확대분에 대한 경감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세 소규모의 업체가 많은 전통주 업계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시장

7) 2022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7.

의 성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통주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국 농산물 우대 정책으로 인한 통상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확대는 해당 주류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으나, 알코올 소비가 장려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0

